

원주의과대학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

제 정 2021. 07. 01.

개 정 2026. 08. 12.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 3(출석인정)의 출석인정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 범위) 이 지침은 원주의과대학 학부과정 교과목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 2 장 출석인정

제3조 (예비군훈련 등) ① 예비군훈련 또는 징병검사로 인하여 결석한 학생은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비군훈련필증 또는 징병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.

②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중간·기말시험은 대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교과목 책임교수는 수업과 관련된 자료 또는 보충수업 등 학생학 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조 (경조사) ① 아래 각 호의 경조사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어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한다.

1.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

2. 배우자의 사망 시 5일

3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, 형제자매 사망 시 3일

4. 본인 결혼 5일

5. 본인 출산 시 20일, 배우자의 출산 시 10일. 단,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전후로 연속하여 사용 가능

제5조 (질병) ① 감염병 또는 기타 신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 해당 증빙을 갖추어 출석인정을 신청 할 수 있다.

② 해당 증빙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학교 제출용 표기 필수

2. 본원 진단서

3. 응급상황인 경우 본원 또는 타병원 응급실 진단서

4. 공휴일 전후 원주 지역 외 본가 주거지 근처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경우 의무기록 사본과 진단서

③ 비대면 진료와 전화 진료는 인정하지 않는다.

제6조 (생리결석)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생리결석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1. 한 학기 최대 4일 이내, 월 1회, 1회 1일 이내. 다음 생리결석은 2주 경과 후 신청 가능

2. 결석일 당일 결석계 제출

② 채플수업에 대한 출석인정은 허용하지 아니하며,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의 생리결석 또한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제7조 (기타 정당한 사유) 그 외 기타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한 이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담당 교수는 온라인강의 수강, 과제물 부과 등 수업 대체 요건을 부과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8조 (출석인정시수) ① 출석인정은 결석을 포함한 실제 수업 시간 수의 3분의 1이내에서만 가능하다.(단, 과정별을 기준으로 하며, 예비군 훈련 및 경조사는 제외)

② 입원시 보강 또는 과제물 부과 등 수업 대체 요건을 부과하여 수업 시간 수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9조 (기타)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학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1. 본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개정세칙(제 4조)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적용한다.
- 3. 이 개정세칙(제 3조의 ③과 제8조)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4. 이 개정세칙(제 6조의 ①)은 2026년 3월 1일(2026-1학기)부터 적용한다.
- 5. 개정 지침(제 4조의 ①, [별지 1호]의 제목, 2의 ② 경조사 및 3. 제출기한)은 2026년 3월 1일(2026-1학기)부터 적용한다.
- 6. 개정 지침(제4조의 ①, [별지 1호] 2의 ② 경조사는 2026년 6월 22일부터 적용한다.
- 7. 개정 지침(제 5조(질병) ②, ③ , 제8조 신설, 제 9조(기타) 조문 이동, [별지 1호]의 ③ 질병결석 증빙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8. 개정 지침(제 5조(질병) ②항의 4호 개정)은 2026년 9월 28일자로 적용한다. 단, 이 지침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개정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 1호] 원주의과대학 출석인정 신청서

<원주의과대학 출석인정기준>

1. 근거 : 원주의과대학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

2. 원주의과대학 출석인정 기준

- ①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등에 참여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② 경조사: 증빙을 갖추어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한다.
(경조사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.)
 - 1.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
 - 2. 배우자의 사망 시 5일
 - 3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, 형제자매 사망 시 3일
 - 4. 본인 결혼 5일
 - 5. 본인 출산 시 20일, 배우자의 출산 시 10일. 단,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전후로 연속하여 사용 가능
- ③ 질병 또는 생리결석 : 해당 증빙을 갖추어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.
 - * 질병결석 증빙: 학교제출용이 명시된 [본원 진단서], [응급상황인 경우 본원 또는 타병원 응급실 진단서], [공휴일 전후 원주 지역 외 본가 주거지 근처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경우 의무기록사본와 진단서], 단 비대면/전화 진료 미인정
 - * 생리결석 인정: 학기 최대 4일 이내, 월 1회, 1회 1일 이내, 결석일 당일 제출. 다음 생리결석은 2주 경과 후 신청 가능.
채플수업, 시험 또는 각종 평가시 불인정.
- ④ 기타 정당한 사유 :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담당교수는 온라인강의 수강, 과제물 부과 등 수업 대체 요건을 부과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3. 제출기한 및 절차: 출석인정신청서는 사유발생 7일 이내 지도교수 승인 후 교육파트로 제출 (생리결석은 결석일 당일 제출, 생리결석 및 공적 서류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 승인 절차 생략 가능)

학 과			학 년		
학 번			성 명		
결 석 사 유	☐ 예비군동원훈련 또는 징병검사		☐ 경조사	☐ 질병	☐ 생리결석
			☐ 기타 정당한 사유		
출 석 인 정 신 청 기 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				
결석 과목	결석일자	과정명		교시	담당교수

위와 같이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: _____ (서명)

지도교수: _____ (서명)

* 생리결석, 공적증빙서류를 포함하는 경우 지도교수 승인절차 생략

붙임: 공적증빙서류